

2026년 대전형 코업(co-op) 「청년 뉴리더 양성사업」 참여기업 Pool 구성을 위한 참여기업 모집 공고(상반기)

대전광역시와 (재)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지역 대학생의 기업 현장 기반 일 경험 및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고, 기업에는 지역 청년 인재 매칭을 위한 「2026년 대전형 코업(co-op)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」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1월 21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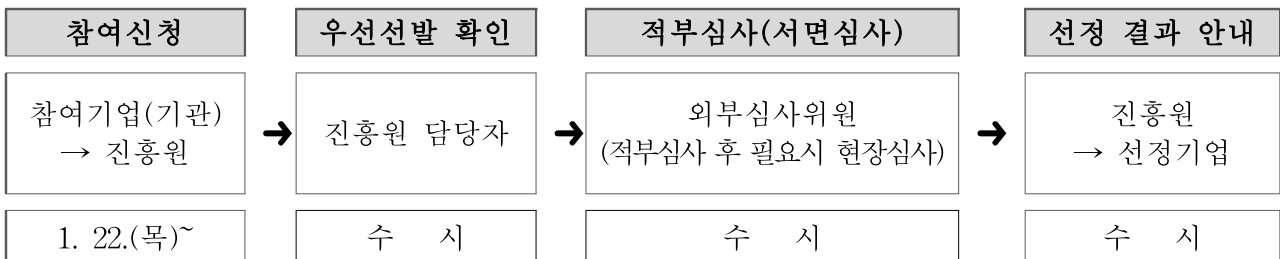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6년 1월 ~ 2026년 12월
- 지원규모 : 5개 대학 소속 대학생 120명, 기업 60개사 내외
- 지원내용 : 직무연수비, 기업 멘토수당

지원 항목		지급기준	지원금액	비 고
대학	운영비	프로그램 운영비, 강사료, 임차비, 여비, 홍보비, 기타비용 등	최대 15,000,000원	진흥원 → 대학
학생	직무연수비	주 40시간, 월 209시간 기준	최대 2,156,880원	대학 → 학생
기업	멘토수당	실습 학생별 전담 멘토 지정	1인당 월 150,000원	대학 → 기업멘토

2. 참여기업 공모 및 선정 절차



※ 추진상황에 따라 추진일정 및 내용 등 변경될 수 있음

※ 본 공모는 참여기업 Pool 구성을 위한 공모로 직무연수생(학생)의 기업 매칭의향 등에 따라 매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음

3. 모집내용

- 선정규모 : 기업 60개사 내외
- 신청기간 : 2026년 1월 22일(목) ~ 선정 및 매칭 완료시까지 / 상반기
- 신청자격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(기관)

1) 기본 조건 :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관내 사업장을 갖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(대표 제외)의 기업 등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설립된 기업
-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, 공공기관(정부·지방자치단체는 제외)
- 사회·경제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
- 국공립사립 유치원,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한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 따른 5인미만 벤처기업* 예외
* 중소벤처24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(<https://www.smes.go.kr>) 기준

2) 우선선발 대상(기업적부평가 및 현장실사 제외) : 최근 3년 이내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
- 대전시 좋은일터 인증기업
- 대전시 유망중소기업
- 대전시 매출의 탑 수상기업
- 대전시 청결기업(청년이 끌리는 기업)
- 고용부 지정 청년친화 강소기업 및 강소기업
- 고용부 지정 일학습병행 학습기업,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
-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업
- 기타 대전시 및 운영기관이 실습기관 모집 공고시 우선 선발대상으로 지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

○ 지원제외 :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 제외됨

- 1) 국제 또는 지방세, 4대 보험 체납으로 강제징수 받은 사업장
- 2)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* 명단 공개기간 내 사업 참여 제한
- 3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* ‘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’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(산업재해발생일이 아님)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
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
- 4) 사업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
- 5) 소비·향락업체*,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업업체 등
* 「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, 「청소년보호법」 공중위생 관리법」 제2조 5호,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
- 6)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
- 7)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, 단단계 판매업체 및 보험회사(외근 영업직) 등
- 8)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및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실습이 어려운 사업장
- 9) 「초·중등 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- 10) 학생이 소속된 대학 내 부설기관
- 11) 학원(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속소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도로교통법」에 의한 학원)과 숙박·음식업종 사업체 / 단, 숙박업 중 호텔업(55101), 휴양콘도운영업(55103)은 가능
- 12) 기타 대전형 코업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13) 대전형 코업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 참여학생의 귀책사유 없는 기업의 의사표시에 의해 사업 중도 포기 등의 이력이 있는 기업

4. 직무연수생 구성

- 자격 : 실무습득과 지역기업 취업 및 정주 의사가 뚜렷한 고학년 학생(재학생, 휴학생, 졸업유예자 등 만 39세 이하 청년)
- 소속 : '26년 대전형 코업 뉴리더 양성사업 선정 5개 대학
※ 국립한밭대(확정), 충남대(확정) / 추가 공모 3개 대학(2월 중 확정 시 추가 공지 예정)
- 지원 및 자격제외 :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지원 제외됨

- 1) 이 사업에 참여학생 이력을 보유한 자로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의사표시로 중도포기 이력이 있는 자
- 2)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
※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규정된 현장실습
- 3)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이거나 예정인 자
※ 유치원·초등·중등·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 관련 학과
- 4)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- 5) 다른 정부·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중 유사한 일경험* 사업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자
* 인턴쉽, 현장실습학기제, 일학습병행, 미래내일일경험 등
*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점프업의 일경험 참여자는 대전형 코업 참여 불가
- 6) 사업주(기업 대표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관계에 있는 자

- 운영관리 : 체험기관(기업)은 체험학생의 산재보험 의무 가입

학생 법적 지위

「일 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(붙임1 참조)」에 따라, 참여 학생은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가 아닌 “일 경험 수련생”으로서의 지위를 가짐

- ※ 학생의 법적 지위를 위배한 부당대우 및 부당지시 등 지양하며, 관련사항 확인시 시행 지침 등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(붙임1 참조)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

5. 지원항목

○ 직무연수생 지원항목

- 직무연수비(운영기관(대학) → 직무연수생)

지원 항목	지원금액	지급기준
직무연수비	최대 2,156,880원	주 40시간, 월 209시간 기준 / 3개월 ~ 4개월 연수

1) 산정방식 ※ 원 단위 절사하여 지급

- 월 최대 2,156,880원(주 40시간 근무, 월 209시간 기준) / 시간급 10,320원(26년 최저시급)
-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우면 1일의 주휴지원금을 지급
-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,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않음
- 병가 등의 사유로 고정 근무시간 미달성 시, 최대한 기업과 상의하여 일정 조율 요망

2) 연차휴가 :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니 꼭 사용할 것

-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
- 연차휴가는 시작일로부터 만 1개월 단위로 계산
 - 근무기간 3.1~6.30까지일 경우 / 3.2일부터 근무 할 경우 3.1~3.31으로 하여 연차휴가 실시
 - 월중에 시작 된 경우 그 다음 달의 전일까지 만 1월로 계산 / ex) 2.15~3.14
 - 체험 마지막 달의 연차는 기업과 협의하여 사전에 사용 가능

3) 지급절차

- (참여기업) 학생 출·퇴근 관리(지원금 계산) 후 출근부를 운영대학에 제출
- (운영대학) 학생 출근부 확인 후 직무연수비를 소속 참여 학생에 지급

- 직무연수비 외(참여기업 → 직무연수생)

지원 항목	지원금액	지급기준
출 장 비	실 비	참여기업에서 직무연수생에게 실비 지원
연장/야간 및 휴일근로	실 비	근로기준법에 따라 참여기업에서 실비 지원 ※ 단, 수행 전 운영기관(대학)과 협의하여 결정
재난상태 등 비상상태에 따른 비대면/재택근무	해당없음 (일부 실비 지원)	직무체험비는 지급하지 않으나 무급 휴가 및 근무일 조정을 권고함 단, 참여기업에서 재택근무를 강요할 경우 실비 지원
그 외 사항	-	기타사항 발생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적용

○ 참여기업 지원항목

지원 항목	지원금액	지급기준
기업 멘토수당	월 15만원 / 1인	실습학생별 전담멘토 지정하여 연수기간 중 지급 (연수기간 : 3개월 ~ 4개월)(대학 → 기업 멘토)

6. 선정절차

- 심사방법 : 심사표에 의거 진흥원 사전심사, 필요시 실습환경 심사
 - 선정심사위원회에서는 참여기업에 대한 자격 적부에 대한 서면 심사 진행(비대면 원칙, 필요시 현장 방문)
 - ※ 우선선발 대상은 자격요건 증빙 확인을 통해 자격 적부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.
 - 기업 요건 등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, 참여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심사항목

적부심사(자격요건평가)	현장실사(필요시)
1) 우대선발사항(인증현황)	1) 조직형태(사업장 운영, 실습생 근무지 소재)
2) 사업장 등록(3년 이상, 소재지 대전여부)	2) 근로자(상시근로자 근무 여부)
3) 근로자 규모(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)	3) 인프라(부서환경 및 실습공간 환경)
4) 직무적합성 (실습기관 직무와 요구조건 등 적합도)	4) 실습물품(실습생 필요 물품 제공여부)
5) 운영/지도계획(운영 및 지도계획 구체성)	5) 화학물질 취급(화학 또는 유해물질 취급여부)
	6) 기타 실습학생 파견 부적합사항

- 선정결과 : 선정심사 후 기업별 개별 통보

7. 기타 유의사항

- 본 모집은 학생과 기업 매칭 전 기업 Pool 구성을 위한 공고이며 학생의 기업 매칭의향 등에 따라 매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음.
- 참여기업(기관)은 모집·공고 신청시 상시 근로자의 20% 내(소수점 이하는 절상)에서 신청 가능하며, 회차별(상·하반기) 최대 3명, 연간 최대 5명까지 신청할 수 있음.
- 참여기업이 허위자료 제출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, 시행지침 및 협약 위반사항이 중대하여 학생의 직무체험(실습)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의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. (해지될 경우, 해지일로부터 1년간 사업신청을 제한함.)
- 공고문에 기재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음.
- 제출서류는 지정서식 준수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심사내역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.
- 심사기준 미숙지 또는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참여기업에게 있음.
- 선정된 기업은 학생과 매칭 후 대전일자리정보망 로그인을 통해 온라인 등록(신청) 및 전자협약 등 진행 예정

8. 신청방법 및 문의처

- 신청기간 : 2026년 1월 22일(목) ~ 선정 및 매칭 완료시까지 / 상반기
- 신청방법 : 제출서류 작성 및 구비 후 모든 서류 통합 스캔본(PDF파일)을
일자리지원센터 담당자 이메일(cheonjhzz@djbea.or.kr) 제출
 - 예외사항 : 이메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, 신청기간 내 우편 제출 가능
 - 우편 제출처 :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1층 일자리지원센터
- 제출서류

연번	구분	제출서류	발급처
1	필수	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	온라인(정부24) 오프라인(세무서, 무인발급기)
2	필수	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	온라인(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) 오프라인(4대보험 관련 기관)
3	해당시	벤처기업확인서(5인 미만)	온라인(정부24)
4	해당시	우선선발 대상 증빙서류	붙임2 참조
5	필수	1) 운영계획서 2) 운영계획 및 직무기술서 3) 사전 서면점검서 4) 기업소개서 5) 정보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지정서식 활용(붙임3 참조)

- 문의처 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담당자(042-719-8345)

- 붙임 1. 일경험 수련생 지위 및 유형별 조치 1부
2. 신청서류 서식 각 1부
3. 사업 시행지침 1부. 끝.